##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2

발의연월일: 2020. 7. 27.

발 의 자:정춘숙·이용빈·김민기

김성주 · 고영인 · 권칠승

유동수・박 정・김정호

김윤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없거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기도 함.

이에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등을 활용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41조 및 제79조의3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감염병관리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라 한 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관리기관의"를 "감염병관리기 관 등의"로, "감염병관리기관이"를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를 "시설치료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을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의사 등이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 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 료 대상자가 아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자가 또는 시설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원에"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감염병의심자
-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감염병환자 등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전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3제2호 중 "입원 또는 치료"를 "입원치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자가치료 및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로 한다.

제8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 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 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 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 기관 등"이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감</u> 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u>감염병관리기관이</u> 아닌 다 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 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 |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 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 려가 있는 사람

<신 설>

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 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에서 입원치료하게----.

-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등 이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 치료 대상자가 아닌-----
- 3. 감염병의심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자가 또는 시설 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원 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감염병환자 등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

<신 설>

-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u>입</u>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u>자</u><u>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u><u>치료</u>를 거부한 자
  - 4. 5. (생략)

제83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신 설>

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
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u>부담한다.</u>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4
항에 따른 전원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3(벌칙)
1. (현행과 같음)
2 <u>입</u>
원치료
3 <u>자</u>
가 치료 및 시설치료 또는 의
료기관에서 입원치료
4. • 5. (현행과 같음)
제8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u>.</u>
1 • 9 (혀해과 간은)

2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